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조 태 제* · 소 병 천** · 김 형 섭***

차 례

- I. 서론
- II. 발의안 연구
- III.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여
- IV. 총회 후속조치

[국문초록]

최근 들어 자연재난 발생 빈도나 그 정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연 재난이 재해 지역의 산업시설에 영향을 미쳐 제2차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일본 도후쿠 지역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 지역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으며,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보건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친 위해의 규모는 아직 산정하기도 힘든 정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재해 대응 관련 국내 및 국제법 제도에 대한 미비점 역시 노출하였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내법제는 대부분은 보건 및 재산적 위해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점에도 자연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역시 재난으로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립한밭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 환경의 복원이나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동 법의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전적인 소관으로 환경부와의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법제 역시 재해 발생지국이 해당 재해로 인해 주변국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재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 조기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및 피제공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수 배출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안전으로 다루어졌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재해의 제2차 환경피해의 관리방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발의안은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발의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기관과 NGO등 민간 영역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발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의안의 개발 및 채택시의 경과와 그 후속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이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인류 사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관리책을 발전시켜왔다. 오늘날에도 국제적 수준의 대형 자연재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인근의 해일로 2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08년 미얀마의 초대형 태풍,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정부추산 13만 명, 원조 기관 추산 2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음)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8만 8천여 명의 사망자, 37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도후쿠 해저 지역에서 기원한 지진 및 해일로 인해 2만여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자연재해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제도를 통해 자연재해의 규모와 정도 그리고 태양에 따라 재해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연재해 자체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떠나 자연환경의 파괴도 초래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자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의 복원력으로 인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는 과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부각된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는 국제사회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과 이를 위한 action plan 이 요망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자연 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의 예방 및 관리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반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의 자연재해 관리 및 예방책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현재 재해 방지 관련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이며 관련 법규를 살펴보다라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는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매뉴얼 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해당 매뉴얼에 자연 피해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재난 사고 후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차적 관심 역시 자연재해의 규모 및 정도의 중대성 또는 해당 국가의 극복 역량 한계 등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재해가 2차적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주변국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조기에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단시간 내에 국제적 컨센서스를 얻어 조약(1986년 조기통보제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조기통보(early notification)제도는 이제 국제관습법으로까지 확립된 상태이다.¹⁾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통해 국제사회는 해당 조기통

보의무가 좀 더 명확하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즉,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수로 배출하는 허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과 주변국의 반발 등은 조기통보제도 상 원전 사고 자체의 통보 외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를 수신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제도적 흠결이 노출된 계기가 되었다.²⁾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의 관리책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양 차원에서 모두 접근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재해관리책에서 환경을 포함한 재해관리책이 포함된 통합적 관리책을 모색하고, 국제적으로는 조기통보제도의 명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관련 지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환경법학회는 2012년 9월 6일에서 1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 관리”라는 발의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동 발의안 개발 연구는 상기의 필요성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 재해로 인해 야기된 제2차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행동강령을 국가, 국내 NGO, 그리고 IUCN에게 요청하기 위함이다. 동 발의안은 첫째, 국내적으로 자연 재해로 인한 인간 보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연 환경피해의 모니터링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작성을 기관 회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모니터링에 환경 단체 등 국내외의 NGO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NGO회원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이해관계단체의 회동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동 발의안은 자연 재해로 인해 야기된 제2차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한 국제환경법 규범체제로서 통지의무에 대한 IUCN의 관심 및 회원국에 대한 지역협정 체결 촉구하고 있으며, 통지대상 정보의 공공접근권을 보장하고 및 이에 대한 NGO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한중일 삼국정상 회의에서 이루어

1)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4권 1호, p.33, 2012.

2) Id.

진 조기 통보 협력을 위한 논의 착수 합의를 동북아 지역 협력 협정체제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중일 조기통보협력체제 구축을 동 발의안의 시범사업(pilot programme)으로 운영할 것을 IUCN이 제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동 발의안 연구는 국내적으로는 기존 인간 중심의 관리책에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 관리책을 모색하되 그 방법론적으로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조기통보제도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은 국가회원, 정부기관회원 그리고 NGO회원을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IUCN이 국제협업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상징이자 그 포럼(forum)이라는 차원에서 발의안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II. 발의안 연구

1. 발의안 연구 절차

발의안은 기본적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자연재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제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법제와 국제법제로 나누어 자연재해 관련 법규범을 살펴보았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해당 법규범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국내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시 대응하여야 할 매뉴얼이 부처별 명확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자연 재해 시 환경피해 복원을 위한 모니터링이 부족하였다. 특히,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관련 재해복구 시 환경피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 주무부서인 환경부와의 협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제도적 인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는 자연재해 발생시 이로 인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피

해국에 조속히 해당 사고를 통보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위한 협의절차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준수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수로의 방출을 일본국 정부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등 최주변국에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기존의 조기 통지 체제에 대한 결함이 노정되었다. 즉,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체결된 1986년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상 원전 사고 자체의 통보 외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를 수신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제도적 흠결이 노출되었다.

이에 한국환경법학회는 학회 내 해당 문제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주변 선진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³⁾ 또한 발의안 개발을 위해 환경법학회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외국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 중 특히 IUCN의 환경법위원회(Commission of Environmental Law)의 주요인사로 자문위원진을 구성하기로 하고 해당 인사들을 초빙 또는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인사로서는 IUCN 환경법위원회의 1998-2006년 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Nicholas A. Robinson교수와 현 위원장인 Sheila Abed de Zavala 변호사 그리고 차기위원장이 유력하였던 Antonio Herman Benjamin 판사 및 환경법위원회 운영위원인 David Hunter 교수 등을 자문단으로 초빙하였다.

이외에도 재해 관련 전문가인 王建平 교수(쓰촨대학교) 및 일본 河田惠昭 교수, 그리고 긴급한 재난시에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가인 독일 Michael Ronellenfitch 교수(튀빙겐대학교) 및 프랑스 Jean Marie Pontier 교수,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기간시설 보호 관련 전문가인 대만 Yi-yuan Su 교수(충칭대) Yang Zewei 교수(무한대) 교수, Ke Jian 교수(환경법연구소 소장)를 자문단에 초빙하였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상기의 자문위원단 중 일부를 초빙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발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부 교수들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병행하였다.

3) 동 연구는 한국환경법학회의 회장인 조태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연구이사인 소병천교수가 국제법 영역을 그리고 총무간사인 김형섭 교수가 국내법 영역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2. 발의안 연구를 위한 주요 활동

한국환경법학회는 2011년 9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된 아시아지역포럼에 참여하여 해당 발의안 초안과 목적을 소개하고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자문활동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주제로 일본 간사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국제학술대회 참석하여(일시: 2011년 10월 17일~20일) 책임연구자인 조태제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중국 王建平 교수(쓰촨대학교)와 일본 河田惠昭 교수(간사이대학)를 비롯한 다수의 교수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동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⁴⁾ 또한 공동연구원인 소병천 교수가 고려대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보, 안전 및 기술관련 국제회의에 참석 하여(일시: 2011년 10월 28일 고려대학교), 동 연구개발에 주 내용 중 하나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이신 대만 Yi-yuan Su 교수(충칭대)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⁵⁾ 문 헌 연구를 위하여 독일을 방문하여 EU지역 네트워크 점검 및 협력시스템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일시: 2012년 2월 20일~3월 20일) 동 자료조사를 통해 유럽지역 네트워크 점검의 일환으로 보조연구원의 방문과 서신을 통하여 학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청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독일 Jan Ziekow 교수(슈파이어대학교)에게 원자력행정의 위기관리 및 대응에 대하여, 독일 Michael Ronellenfitsch 교수(튀빙겐대학교)에게 긴급한 재난시에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에 대하여, 프랑스 Jean Marie Pontier 교수(파리대학)에게 긴급복구시의 국가의 재정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전문적 의견을 전달받았다. 특히 동 발의안을 설명하고 2012년 IUCN의 WCC총회의 참석과 향후 발의안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공동연구원인 소병천 교수가 2011년 3월 16일 아주대학교에서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의 재 쟁점 연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만 충칭대학교 Yi-yuan Su 교수를 초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기간 시설 보호”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Yi-yuan Su 교수는 환경

4) 조태제, “한국의 자연재해법의 현상과 과제”, [자연재해와 법(自然災害と法 - 2011, 10, 19 간사이대학]

5) Byung Chun So & Christopher Salatiello, “The Principle of Emergency Notifica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 2011. p.237.

법학회의 발의안에 대한 논의 중 중국 무한대학의 환경법연구소 소장인 케 쩌안 교수가 홍콩에 체류 중임을 알려주고 케 교수를 통해 중국 내의 주요 환경법 관련자를 소개 받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발의안을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정보를 얻는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에 소병천 교수가 홍콩에 체류 중인 무한대학의 환경법연구소 소장인 케 쩌안 교수를 만나 학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향후 협력 의사 타진하였다.(일시: 2012년 4월 21일~4월 24일) 케교수는 무한대학의 환경법 권위자이자 IUCN의 위원인 양쯔 바이 교수를 8월 대만 학회에서 소개시켜 주기로 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8월 대만 국립청화대학에서 “동아시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법”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일시: 2012년 8월 21일-23일 대만 국립청화대학교), 양쯔바이 교수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환경법학회는 발의안 연구를 위해 국내외의 환경법학자를 초빙하여 발의안의 내용인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하여 2012년 3월 20일 한양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학술대회에는 동 연구의 자문위원이자 2012 WCC 운영위원인 David Hunter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동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자문을 하였다. 나아가 IUCN 환경법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을 2차례 역임한 Nicholas Robinson 및 환경법위원회 핵심위원인 Ann Powers 교수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동 발의안 개발에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수들은 9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동 발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IUCN 내의 핵심인사 및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주선하여 주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발의안 홍보 및 채택을 위한 총회 전 활동

동 발의안의 연구의 기본 목적은 발의안 작성에 그치지 않고 동 발의안이 WCC를 통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IUCN 환경법위원회의 주요 관계자 등 소위 key men들과의 사전 협조가 요망되었다. 이에 환경법학회는 동 발의안 채택 과정에서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David Hunter IUCN WCC 운영위원회 위원 및 IUCN 환경법위원회 전임 위원장을 역임한 Nicholas Robinson 교수의 협조를 얻어 환경법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동 발의안의 채택에 현실적 자문을 구한 결과, 총회 기간 중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법위원회 주요 인사를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들의 의견을 듣고 발의안 채택에 협조를 구할 것을 조언 받아 이를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WCC공식 홈페이지에 동 발의안의 홍보사이트를 통해 발의안을 소개하고 토론방을 열어 토론을 준비하고 재해 관련 발의를 하는 기관들과 협조를 진행하였다.

4. 발의안 내용

(1) 최종 제출 발의안(영문)

Management for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by Natural Disasters

MINDFUL OF the significant impact on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of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tsunami, storm, landslide, flood, volcano eruption and other disasters,

RECALLING disaster damages to human being and the environment are also resulted from the secondary damages through industrial accidents after natural disaster,

UNDERSTANDING that we cannot stop the natural disaster itself; however, we can prevent, prepare and respond to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in order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damages,

AWARE that many industrial zone and nuclear power plant complex are located on riverside that is exposed to flood and coastal zone that is vulnerable to tsunami and storm,

AFFIRMING all prevention measures to reduce serious adverse effects of secondary industrial accidents by natural disaster o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are necessary,

ACKNOWLEDGING of promoting the rational, economic and efficient use of preventive, preparedness and response measures to enabl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WARE of necessity of natural disaster action system through a manual for disaster emergency response, disaster recovery and ecosystem distortion action,

EMPHASIZING of restoration research through consistent monitoring regarding environmental damages by natural disaster,

CONSCIOUS of the role played in this respect by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ublic,

AFFIRMING importance of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n natural disasters and subsequent industrial accidents, and subsequent measures,

NOTING the secondary damages to environment influence not only domestic jurisdiction but also beyond the jurisdiction,

AFFIRMING the need to promote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concerned before, during and after an accident, to enhance appropriate policies and to coordinate action at all appropriate levels for the prevention of, preparedness for and response to the transboundary effects of natural disaster and subsequent industrial accidents,

RECALLING significant adverse impact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human well-being and ecosystem service,

NOTING that Korea, Japan and China agreed to start discussion on establishing early notification framework in case of emergency and exchanging experts, and to contemplate on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nalysis and forecast of air flow trajectory on a real time basis in case of nuclear accident on 22 May 2011 after Fukushima accident,

CONSCIOUS of the role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new global governan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early and prompt notification rule regarding natural disasters and subsequent industrial accidents, and subsequent measures for management of the damages,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at its 5th session in Jeju, Korea 6-15 September 2012:

1. AFFIRMS that urgent action is necessary for 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2. CALLS ON GOVERNMENT AGENCIES:

a. to review their 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systems for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 b. to make a manual for disaster emergency response, disaster recovery and ecosystem distortion action,
- c. to cooperate with regional countries that affect each other in case of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industrial accidents resulted from natural disasters,
- d. to cooperate for exchange of experts regarding disaster emergency response and ecosystem monitoring action,
- e. to make a regional agreement that provides early and prompt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to reduce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 f. to recognize the rights of public to acces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affecting countries, and the non-discriminational rights of the foreign public,

3. CALLS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a.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 b. to urge government to develop and to establish the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for access to information,
- c. to hold stakeholder meeting in regional group for discussing th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ystem,

4. CALLS ON GOVERNMENT AGENCIES:

- a. to participate in monitoring project in ecosystem destroyed by natural disaster
- b. to make a manual of management of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by natural disaster
- c. to investigate any environmental risk from natural disaster in the IUCN protected areas and call introduction of early notification system to concerned countries,

5. REQUEST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to take a step for concluding regional agreement regarding early notification system in nuclear accident and natural disaster as they agreed on 22 May 2012 as a pilot programme for this motion,

(2) 발의안 국문번역본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지진, 해일, 태풍, 산사태, 홍수,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인간의 생명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상기하며,

자연재해의 인간 생명 및 환경에 대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제2차 사고를 통해서도 야기됨을 인식하고,

인류가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피해의 빈도 및

정도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준비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감하며,

산업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단지의 상당수가 홍수나 해일에 노출되어있는 해안가나 강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산업사고의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예방, 준비 및 대응 조치의 합리적, 경제적, 효율적 활용 증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함을 인지하고,

자연 재해 긴급 대응, 재해 복구 및 생태계복원을 위한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자연 재해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함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 정부, NGO 그리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인식하고,

특히 공공부분의 자연재해,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및 추후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제2차 피해는 국내 관할권을 넘어 국경 외에도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국가간 자연재해 및 이차적 산업 사고의 초국경적 영향을 예방하고 준비하며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준의 행동을 조율하고 적절한 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고 발생 전 발생 중 그리고 발생 후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이 요망됨을 인식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보건 복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5월 22일 원전 사고 시 실시간 대기 분석 및 예보 관련 정보의 교환과 전문가 교류 그리고 조기 통보를 위한 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지적하고,

국제환경경제 상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간 국제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을 상기하며,

자연재해와 추후 산업사고 및 피해 관리를 위한 관련 조치의 조기 및 적절한 통지 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2012년 9월 6일에서 15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된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제 5차 회기에서

1.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함을 확인하며,

2. 다음의 사항을 정부 기관 회원에게 요청하며

- a. 자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제를 점검할 것,
- b. 재해긴급대응, 재해 복구 및 생태계복원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 c.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사고 시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국가들과 협력 할 것,

- d. 주변국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긴급 대응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인력 제공에 협력 할 것,
 - e. 제2차 환경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조기 및 적절한 통지 및 협력 체제를 담은 지역 협정을 체결 할 것,
 - f. 사고 원인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자국 국민의 접근권 및 외국 국민에 대한 비차별적 권리를 인정 할 것,
3. 다음의 사항을 비정부간 기구 회원에게 요청하며
- a. 비정부간 기구 회원에게 환경정보에 대한 공공접근권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
 - b. 비정부간 기구에게 자국 정부로 하여금 정보 접근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접근제도를 구축하도록 촉구할 것,
 - c. 공공정보접근권 논의를 위한 지역 이해관계자 회의개최를 촉구할 것
4. 다음의 사항을 IUCN에게 요청하며
- a.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훼손 지역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것,
 - b.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을 작성 할 것,
 - c. IUCN보호지역 내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 할 환경피해 위협의 조사 및 관련국에게 조기통보제도 도입을 요청 할 것

5.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에게 3국이 2012년 5월 22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전사고 및 자연재해 시 조기 통보 제도에 관한 지역협정 체결을 동 발의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것.

(3) 공동발의기관

동 발의안은 다음과 같은 기관과 공동 발의하였음.

환경부 자연정책국(Natur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산림청(Korea National Park Service),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국(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reau of Environment), 한국습지학회(Korean Wetlands Society), 한국자연보전연맹(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Ⅲ.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여

1. Press Meeting 개최

한국환경법학회는 환경법학회가 운영하는 워크숍의 적극적 홍보와 동 학회가 발의하는 발의안의 홍보를 위해 총회 기간 중인 9월 7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제주 컨벤션센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내외신 기자가 참여한 동 기자회견에서 조태제 회장은 발의 배경과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소병천 교수는 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적극적 홍보에 임하였다.

2. 워크숍 운영

환경법학회는 2012년 9월 7일 오후 5시 제주컨벤션센터 3층 삼다홀에서 동 발의안을 소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2차 환경피해의 예방과 대책”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동 워크숍은 조태제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IUCN의 6개 위원회중 하나인 환경법위원회(Commission of Environmental Law) 위원장을 2차례 역임한 미국 뉴욕, 페이스 대학교 로스쿨(Pace University, Law School)의 니콜라스 로빈슨(Nicholas A. Robinson)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워크숍의 메인 이벤트로 소병천 교수가 발의안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차기 환경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Antonio Herman Benjamin 브라질 대법원 판사, IUCN 환경법위원회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과 위원장인 Richard L. Ottinger, David Cassuto 페이스 대학교 교수,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부찬 교수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의 홍유덕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소병천 교수는 발의안 소개를 통해 자연 재해로 인해 야기된 제2차 환경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회원에게는 1. 자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제를 점검 할 것, 2. 재해 긴급 대응, 재해 복구 및 생태계복원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3.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사고 시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국가들과 협력 할 것, 4. 주변국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긴급 대응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인력 제공에 협력 할 것, 5. 제2차 환경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조기 및 적절한 통지 및 협력 체제를 담은 지역 협정을 체결 할 것, 6. 사고 원인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자국 국민의 접근권 및 외국 국민에 대한 비차별적 권리를 인정 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NGO회원들에게는 1 환경정보에 대한 공공접근권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 2. 자국 정부로 하여금 정보접근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도록 촉구할 것, 3. 공공의 정보접근권 논의를 위한 지역 이해관계자 회의개최를 촉구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IUCN 사무국에게도 1.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훼손 지역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것, 2.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을 작성 할 것, 3. IUCN보호지역 내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 할 환경피해 위험의 조사 및 관련국에게 조기통보제도 도입을 요청 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환경법학회의 발의안은 한·중·일 삼국 간 원전사고 및 자연재해 시조기통보체제구축을 위한 지역협정 체결을 동 발의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표적 제2차 환

경피해 사례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주변국에 통지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행위는 국제법상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한중일 삼국간의 환경장관회의(TEMM) 제13차 회의 및 같은 해 5월 21일 열린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도 일본측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고 그 추후 대책으로 비상사태 시 조기통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착수하기로 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의안은 의미가 있다. 특히, IUCN이 국가회원, 정부기관회원, NGO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일본 역시 국가회원이자 정부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3. 기타 활동

환경법학회는 동 학회가 발의안 채택을 위해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첫째, 환경법위원회의 공식세션과 범 관련 행사에의 참여 둘째, 동 발의안의 주제인 재난 관련 유사 발의안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로 계획하고, 환경법학회의 회원들을 독려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해당 자리에서 환경법학회의 워크숍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나아가 관련 행사를 주도한 회원들에게 9월 12일 있을 환경법학회 발의안 투표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동 발의안의 내용이 국제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결의안이 국제적 거버넌스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법학계를 대표하는 대한국제법학회의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여 소병천 교수가 “국제환경법에서 IUCN의 법적지위 및 역할”이라는 발제를 하고 동 발의안을 소개하였다.

4. 발의안 제출 결과 및 평가

한국환경법학회가 발의한 “Management for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by Natural Disasters”은 발의안 번호 149번으로 제출되었으며 9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모든 정부기관의 95%에 해당하는 121개 정부기관 그리고 모든 NGO의 98%에 해당하는 462개 NGO회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음. 그러나 원 발의안은 일

본 외교통상부의 코멘트로 인해 다소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부분의 원안과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강조 표시 참조)

	원안	수정안
1	NOTING that Korea, Japan and China agreed to start discussion on establishing early notification framework in case of emergency and exchanging experts, and to contemplate on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nalysis and forecast of air flow trajectory on a real time basis in case of nuclear accident on 22 May 2011 after Fukushima accident,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China reached common recognition on May 2011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o start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n early notification framework in case of an emergency and exchanging experts, and to contemplate on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nalysis and forecast of air flow trajectory on a real time basis in case of a nuclear accident;
2	5. REQUEST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to take a step for concluding regional agreement regarding early notification system in nuclear accident and natural disaster as they agreed on 22 May 2012 as a pilot programme for this motion,	5. REQUEST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to discuss early notification framework in the case of nuclear accident and/or natural disaster as the three countries decided on 22 May 2012 as a pilot programme for this motion,

수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인 agree 대신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reached common recognition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의견은 2012년 5월 22일 채택된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의 표현 그대로 하자는 것이나, 연구진이 연구를 할 당시 확보한 공동선언문(communique)에서도 agree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기관 회원의 의견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외교통상부에 확인 요청을 하였다. 또한 조기통보 체제에 대한 지역협정 체결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표현 역시 to take a step for concluding regional agreement regarding에서 to discuss early notification framework로 수정되어 결국 조기 통보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강도가 낮아졌다. 이는 첫 번째 주장과 달리 원 합의문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IUCN이 회원에게 촉구하는 바임으로 원안대로 단

순한 논의가 아닌 지역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유지되어도 무방한 것이나 일본 측의 부담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IUCN이 사실상 국제기구로서 일본정부가 동 발의안에 동의하는 경우 스스로 지역협정 체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성되는 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담을 느껴 이를 완화하는 문구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진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측의 수정은 명확히 회의록에 나와 있으므로 향후 일본의 소극적 태도의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으며, 만일 두 개의 영문본이 있는 경우 일본 정부의 국제적 결례 및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

IV. 총회 후속조치

1. 개요 및 기본방향

동 발의안이 결의로 채택됨에 따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IUCN의 다음 WCC가 열리기 전까지 4년 동안의 정책과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발의안 채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즉, 동 결의문이 적시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 관리를 위한 법제도 수립을 위해 IUCN은 결의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는 필시 환경법위원회의 업무로 지정될 것이 예상된다.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발의안 채택에 따라 환경법위원회에서 재난관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해당 그룹에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 관리를 위한 법제도 수립 연구를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법위원회에 여러 루트를 통해 접촉하여 해당 전문가그룹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의 자문위원을 맡은 Nicholas Robinson 교수와 Antonio Herman Benjamin판사가 전 현직 환경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은 상기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Nicholas Robinson 교수는 현 위원장에게 많은 한국 환경법 교수를 우선적으

로 환경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여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재난관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한중일 자연재난협력관련 지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자연재난협력관련 지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그 사무국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후속조치 전략 및 필요사업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IUCN 자체에 대한 접근전략과 사업으로 우선 환경법위원회에 많은 한국 환경법학자가 참여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법학회의 공동사업으로 매년 3인에서 5인의 환경법학자를 매년 개최되는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하였다.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는 2004년 상해에서 첫 회를 시작한 이래 매년 5개 대륙을 순환하며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환경법학자대회이다. 해당 대회에는 상당수의 환경법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바, 해당 회의에 참여하고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외국 주요 환경법학자들과 교분을 쌓은 것은 환경법위원회의 한국 학자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선출된 Antonio Herman Benjamin판사가 선출 후 현 869명에 이르는 환경법위원회 위원수를 진성 위원으로 대폭 감축하는 차원의 환경법위원회 재구성 정책을 표하였다는 사실에도 비추어 한국환경법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위원회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 chair를 맡고 있는 Rob Fowler (South Australia, Law School) 교수와 접촉한 결과 차기 대회는 내년 7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다고 하며 내년 초 IUCN 환경법위원들을 포함한 전 세계 환경법학자들로부터 발제 및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이에 환경부가 매년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에 “세계 환경법 현안과 동향”이라는 연구용역 형식으로 3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환경법학회는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되는 연구진을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에 과감하여 해당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관련 환경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발표하고 또한 다른 외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환경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하였다.

둘째, IUCN 환경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사업 관련 친 대한민국 인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도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임 위원장인 Antonio Herman Benjamin 판사는 브라질 대법원 판사로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환경 판사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환경전담재판부 또는 환경법원 설립에 많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이번 제주 WCC에서 환경법원을 관련된 “court and access to justice” 발의안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전 세계 30여 개국의 환경법 전문 유수의 판사 40-50여명의 참여하고 있는 “Environmental Judiciary Meeting”는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만일 내년 10월 경 예정되어 있는 “Environmental Judiciary Meeting”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여 대법원, 환경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및 기타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 Antonio Herman Benjamin 판사와의 접촉을 떠나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국제 교류 및 환경법제의 발전에도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IUCN과의 접촉을 떠나 한중일 자연재난협력관련 지역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자연재난협력관련 지역협정 체결은 이번 환경법학회의 발의안에 일본정부의 수정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소위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을 통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학자를 중심으로 한 해당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회의로 발전시키고 참여 범위도 자연과학자에서 사회과학자의 참여까지 확산시키며, 이를 민간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 회의로 확대 개최하여 자연재해 예방, 대응 및 관리 차원의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논의하는 지역 회의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이해자 관계 회의가 한중일 자연재난협력관련 지역협정 체결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망된다.⁶⁾ 나아가 해당 지역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IUCN의 결의안으로 채택된 이상 단순한 정부가 주도하는 차원에서

6) 소병천,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2호, 2009.

접근하기보다 국제적 민간기구인 IUCN의 역할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배경으로 협약 체결의 정부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IUCN 위원회 및 민간 단체 등의 민간 영역간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4권 1호, 2012.
- 소병천 “국제환경법에서 IUCN의 법적지위 및 역할”, 대한국제법학회 2012년 9월 8일 ‘WCC와 환경 그리고 법’ 학술대회 자료집.
- 소병천,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2호, 2009.
- 조태제, “한국에서의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과대학원저널(제7호), 관서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2012.3.
- Byung Chun So & Christopher Salatiello, “The Principle of Emergency Notifica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 2011.

[Abstract]

**A Study for Development and Adoption of Motion i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of 2012:**

Management for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by Natural Disasters

Tae Je Cho · Byungchun So · Hyung Seob Kim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 Hanbat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increasing numbers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Natural disasters cause not only damages to human life and health but also damages to the environment. Especially, so called the secondary damages to natural environment through industrial accidents after natural disaster is getting importance in these industrial societies.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 2011 can be illustrated as one of examples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ukushima accidents has left the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First of all, 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focuses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and property damag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environment itself including restoration of it and monitoring system for the restoration. Moreover, this process should be done in the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authority.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Chernobyl accident is the early notification system. The early notification system asks origin countries of the disaster of notifying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aster including its preventive measures to neighboring countries who might be affected by the disaster. However, the system showed some defects such as unclear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notified and subject countries who can be entitled to be notified.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charging of the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of Japanese government was not notified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ina. It was discussed in the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nd Summit of Korea, China and Japan in 2011 and they agreed on the subsequent measures regarding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was projec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raised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the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in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hich is a general assembly of IUCN(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t explore the contents of the motion and its process including subsequent tasks for the motion.

주 제 어 자연재난 관리, 긴급통지제도, 후쿠시마 원전, 세계자연보존총회, 환경법학회 발의안 개발

Key Words Natural Disaster Management, Early Notification,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Development of KELA Motion